

해외이주·유학 신고

떠나기 전에 알림!
해외이주·유학 시 신고하세요

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로 이주 또는 유학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단에 해외이주·유학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관련근거 「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」 제20조, 제21조

신고대상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채무가 남아있는 자 중 해외로 이주하려는 자, 6개월 이상 해외 유학하려는 자

- 1) 해외이주자
해외로 이주*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재단에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1개월 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함 (단,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(보증인) 제공 후 분할상환약정 체결 가능)
* 해외이주 : 연고이주(결혼 등), 무연고이주(취업 등), 현지어주
- 2) 해외유학생
6개월 이상 해외로 유학*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재단에 해외 유학 신고하고 담보(보증인)를 제공하여야 함
* 해외유학 : 교환학생, 어학연수, 워킹홀리데이, 해외봉사, 해외인턴십, WEST프로그램, 자비유학(해외대학·대학원 진학 포함) 등

- 신고방법**
- ① 해외이주·유학 신고하기
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관리 ▶ 해외이주/유학관리
* 귀국신고 : 해외 유학생은 귀국 후 연대보증인 해지 및 유학종결처리를 위해 귀국신고 필요
 - ② 보증인 등록하기
(해외유학생 및 해외이주신고 후 분할상환하려는 자)
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관리 ▶ 연대보증인등록
 - ③ 든든분할상환약정 등록
(해외이주신고 후 분할상환하려는 자)
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관리 ▶ 든든분할상환전환약정

제재사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(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44조②)

대출상환 상담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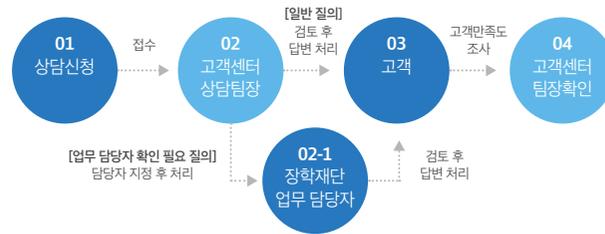
대출상환 상담!
편하게 물어보세요

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 고객센터를 받거나, 상담센터(1599-2000)에 전화상담이 가능하며, 대면상담을 원하는 경우 권역별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
1) 홈페이지(온라인 고객센터)

- 일반적인 문의와 상담은 7일 이내, 법령 및 제도관련 문의 사항은 14일 이내 처리해드리며, 업무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질의는 담당자 지정 및 검토 후 처리됩니다.
- 신청경로 : 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 ▶ 고객센터 / 온라인 고객센터 / 상담하기



2) 상담센터(1599-2000)

- 전화상담 운영시간 : 평일 09시 ~ 18시
- 상담원 연결 집중시간 : 평일 11시 ~ 14시

3) 권역별 상담센터(대면상담)

- 방문상담 운영시간 : 평일 09시 ~ 18시
- 방문지참물 : 본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가구원 확인용도(본인 외 방문시))

지역	주소	비고
대구	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(신암동 819-1)	
서울	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(남대문로5가)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고객센터실	
부산	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NC백화점 7층 부산학자금지원센터	
광주	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	'16.7월 오픈예정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 여러분
상환의무는 취업 후로!
신고의무는 잊지 말기!



자발적 상환

자유로운 상환!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

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재학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,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매학기 변동금리 학자금 대출입니다. 따라서, 재학 중에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이 발생하지 않고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상환기간



- ① 상환유예기간(대출취급~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이전) : 원리금 상환 유예
- ② 상환기간(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이후~원리금 상환 완료) : 원리금 상환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소득발생에 따라 상환의무가 유예되지만 그와 별도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.

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상환 (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관리 ▶ 학자금대출상환 ▶ 중도상환)

매월 자동이체 약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자동이체약정 (매월 이체) 체결 (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관리 ▶ 계좌관리 ▶ 든든이체약정등록)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서 직접 해지 가능 (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관리 ▶ 계좌관리 ▶ 든든이체약정해지) ※ 다만, 국세청의 의무상환 고지제납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이 제한될 수 있음

제3자 채무변제 부모 등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갚고자 하는 경우 대출자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대출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. (상담센터를 통한 FAX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)

의무적 상환

의무적 상환! 소득발생하면 상환하세요

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일정한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하면 국세청의 국세징수시스템을 통해 의무적 상환이 시작됩니다.

원리금 상환유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 할 때까지 원리금의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의무상환의 개시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(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르면 2016년 귀속소득 기준 1,856만원임)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.

의무 상환액의 계산 연간 소득 금액 중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를 곱한 금액(의무상환액)을 상환해야 합니다.
※ 의무상환액 = (연간 소득 금액 - 상환기준소득) × 상환율(20%)
※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.
※ 상속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(20%)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.

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을 통하여 진행됩니다.

*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(☎126번(내선1-4번))



(연간 소득 금액 - 상환기준소득) × 상환율(20%)

채무자 신고

채무자 신고! 12월을 꼭 기억하세요



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라면, 매년 12월 중 반드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채무자 신고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, 소득정보를 신고 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신고시기 매년 12월1일 ~31일

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의 "채무자신고" 메뉴 (사이버창구 ▶ 학자금대출 관리 ▶ 채무자신고)

신고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, 직장,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 재산의 정보, 소득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

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「취업후 학자금상환특별법」 제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

